

엠바고 : 12.24(수) 08:00

경제관계장관회의 겸  
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  
(12.24)

고령화에도 지속 가능한  
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

---

M&A를 통한  
**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 방안**

---

2025. 12. 24



중소벤처기업부

## M&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방안(요약)

### I. 추진 배경

#### □ 고령 CEO 중소기업 승계 문제는 우리경제 잠재 리스크

- 중소기업 중 후계자 부재로 지속경영을 담보할 수 없는 중소기업 약 67.5만개사\* (제조업 한정시 5.6만개사)

\* 후계자 부재 중소기업 추정(자본시장연구원 추정치 활용, '22년 기준)  
↳ 60세 이상 CEO 중소기업(236만개사) × 후계자 부재율 추정치(28.6%)

⇒ 승계 실패 중소기업의 폐업 증가 시, ^고용충격, ^지역경제 위축 등 우리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

#### □ 그 간의 기업승계 정책은 친족 승계(家業승계 세제지원) 중심

- ^자녀 부재, ^당사자 기피 등 친족승계의 필연적 한계가 발생하는 가운데, M&A를 통한 제3자 승계가 대안으로 주목
- 기업승계 M&A 수요는 21만개 수준으로 추정(자본研, '22년기준) 되며, 향후 10년간 연평균 2.84%로 증가 전망 → '34년 31만개 수준

⇒ 친족승계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고, M&A 방식 제3자 기업승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보완이 필요

#### □ 일본은 M&A로 CEO 고령화에 따른 승계 리스크 효과적 대응

- 일본은 '07년 초고령 사회(65세 이상 20%↑) 진입 후, 휴폐업 수가 급증\*(후자 폐업률도 60% 상회)하면서, 경제·산업에 부담

\* ('00) 16,110개사 → ('07) 21,122개사 → ('11) 25,273개사 → ('16) 29,583개사

- 이에 일본은 M&A형 기업승계 정책(별도법 제정 등)을 추진하여, ^CEO 연령대 하향\*, ^후자 폐업률 감소\*\* 등 성과 도출

\*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경영자 연령 : ('15년) 59~65세 → ('23년) 55~59세

\*\* 후자 폐업률 : ('16) 64% → ('23) 52.4% ('16년 대비 11.6%p 감소)

⇒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기업승계 정책(M&A 활성화) 및 성과를 면밀히 참고하여 정책을 준비

## II. M&A형 기업승계 장애요인 진단

- (장애 ①) 기업승계 M&A에 특화된 법률 체계 부재
  - 기존 중소기업 관련 M&A 법규정은 ^벤처 투자회수 활성화 ^기술거래, ^사업전환 등 특정 정책 목적에 국한
- (장애 ②) 중소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M&A 중개시장 미성숙
  - ^정보 비대칭 및 플랫폼 부재, ^중개·자문 업자에 대한 신뢰형성 부족
- (장애 ③) 중소기업에게 비효율적인 M&A 절차
  - 중소기업은 주주구성이 소수이고 단순하여 상법 절차·요건 및 기간을 모두 준수하게 하는 것은 절차지연 요인
- (장애 ④) M&A 단계별 비용이 상당하나, 특화지원 미흡
  - ^M&A 준비(컨설팅 등) - ^M&A 진행(기업가치평가, 실사, 수수료 등)- ^M&A 후(통합 절차, 시설투자 등) 쏠 과정에 걸친 유기적 지원 필요

## III. 핵심 추진과제

◇ 기업승계 M&A 활성화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될 특별법\* 제정 추진  
\* (가칭)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

- (추진과제 ①) 기업승계 정책 추진의 법적기반 확립
  - ^정의체계(M&A형 승계, 家業승계) ^지원대상(경영자 연령 등), ^지원제외(상장사 등) ^사후관리(승계후 성장지원 연동) ^지원인프라 등
- (추진과제 ②) 신뢰도 높은 기업승계 M&A 시장 조성
  - ^플랫폼 구축(진성 수요 선별·관리), ^중개기관 등록제(요건 등) 도입
- (추진과제 ③) 기업승계 M&A 친화적인 제도 환경 조성
  - ^상법의 M&A 절차 간소화 특례 도입, ^부동산 등기 특례 등
- (추진과제 ④) 기업승계 활성화 및 승계후 성장지원 근거
  - ^기업승계지원센터 등 지원기관 운영, ^M&A 수수료 등 비용보조, ^정책금융 우대 근거, ^성장사업, ^기업승계활성화 계정 설치 등

## IV. 추진일정

- 특별법 발의('25.12월) → 공청회('26.1Q) → 입법완료(~'26.상)

# 순서

I. 추진 배경 .....	1
II. M&A형 기업승계 장애요인 진단 .....	5
III. 핵심 추진과제 .....	8
IV. 향후 추진일정 .....	13

# I. 추진 배경

## ◆ 中企 CEO 고령화로 인한 기업승계 문제는 우리경제 잠재 리스크

□ 인구 고령화 추세 속, 중소기업 CEO 고령화는 더 빠르게 진행

- 제조 中企 CEO 중 60세 이상 비중은 전체 인구중 60세이상 비중보다 가파르게 증가

<60세 이상 인구 비중(%)>



- \* 10년('12~'23)간 60세이상 인구 비중 변화
  - ↳ 전체 인구(10.7%p 증가)
  - vs. **제조 中企 CEO(22.7%p 증가)**

- 최근 5년간('19~'23) 제조 중소기업 수를 CEO 연령대별로 살펴보면, '60대 이상'만 유일하게 증가 → 중소기업 고령화 추세 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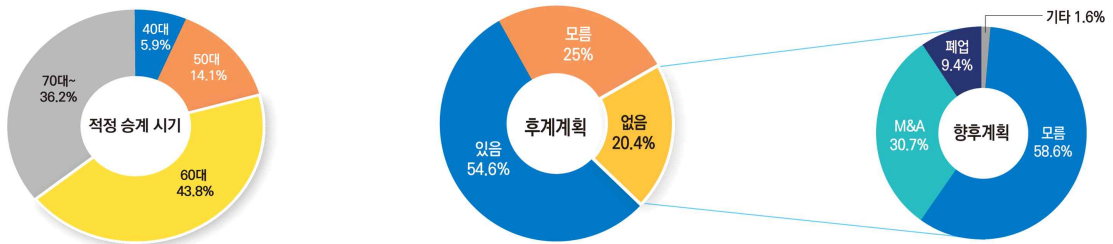
<제조 중소기업 CEO 연령대별 증감('19~'23, CAGR)>

구분	전체	30대 미만	30대	40대	50대	60대 이상	연령 미상
연평균 증가율(%)	1.6	-0.9	-1.7	-3.0	-1.1	<b>11.2</b>	-14.4

□ 대다수 중소기업 CEO는 60대 이상을 기업승계 적정시기로 인식하나, 상당수는 구체적 후계계획이 없는 등 승계준비는 미흡

- CEO 설문에 의하면, 후계계획에 대해 ^모름(25%), ^없음(20.4%) 응답이 상당하고, 후계계획 없는 기업 중 일부는 폐업까지도 고려

<60세 이상 CEO 후계 인식 및 대응(중기연 설문, '24.7월)>



□ 60세 이상 CEO 중소기업은 약 236만개사('22년 기준)이고, 이 중 28.6%인 67.5만개사가 후계자 부재로 지속경영 담보 곤란

- 고용효과가 큰 제조업으로 한정시 약 5.6만개사의 후계자 부재가 추정되고, 이 중 83%인 4.6만여개사가 서울 외 지역에 소재

⇒ 신속한 대응이 없으면 이들 기업의 폐업 증가로 인해 ^고용충격, ^지역경제 위축 등 문제가 확산될 수 있는 리스크 잠복

**< 참고 : 후계자 부재 중소기업 지역별 추정현황 상세 >**

◇ 추정 체계(자본시장연구원)

▶ (중소기업수) 중소기업 기본통계('22년 기준) 활용

\* 60세 이상 CEO 중소기업 비중 : 쏠업종 평균 29.38% / 제조업 평균 31.23%

▶ (후계자 부재율) 日 후계자 부재율 실제로 조사('11~) → 상관변수 도출(경제규모, 인구밀도 등) → 한국 통계('22년 기준) 적용으로 우리나라 中企 후계자부재율 도출

◇ (쏠업종 기준) 중소기업 후계자 부재 추정

지역	중소기업수		후계 부재율	후계 부재기업	
	전체	60세 이상		기업수	지역분포
서울	1,666,401	489,589	36.1%	176,741	26.2%
경기	2,110,760	620,141	27.2%	168,678	25.0%
인천	429,618	126,222	29.2%	36,857	5.5%
충북	239,131	70,257	25.2%	17,705	2.6%
충남	328,214	96,429	25.6%	24,686	3.7%
대전	205,290	60,314	27%	16,285	2.4%
세종	45,293	13,307	28.3%	3,766	0.6%
전북	283,568	83,312	24.8%	20,661	3.1%
전남	294,743	86,595	24.4%	21,129	3.1%
광주	205,262	60,306	28.1%	16,946	2.5%
강원	242,846	71,348	24.4%	17,409	2.6%
대구	344,260	101,144	28%	28,320	4.2%
경북	398,850	117,182	24.1%	28,241	4.2%
경남	482,366	141,719	25.1%	35,572	5.3%
부산	493,459	144,978	27.9%	40,449	6.0%
울산	141,974	41,712	25%	10,428	1.5%
제주	130,691	38,397	25.1%	9,638	1.4%
합계	8,042,726	2,362,953	28.6%	675,805	100.0%

◇ (제조업 기준) 중소기업 후계자 부재 추정

지역	중소기업수(제조업)		후계 부재율	후계 부재기업	
	전체	60세 이상		기업수	지역분포
서울	84,745	26,466	36.1%	9,554	17.0%
경기	202,947	63,380	27.2%	17,239	30.6%
인천	36,533	11,409	29.2%	3,332	5.9%
충북	20,448	6,386	25.2%	1,609	2.9%
충남	26,520	8,282	25.6%	2,120	3.8%
대전	12,052	3,764	27%	1,016	1.8%
세종	2,046	639	28.3%	181	0.3%
전북	17,533	5,476	24.8%	1,358	2.4%
전남	19,273	6,019	24.4%	1,469	2.6%
광주	12,450	3,888	28.1%	1,093	1.9%
강원	11,348	3,544	24.4%	865	1.5%
대구	34,565	10,795	28%	3,023	5.4%
경북	41,034	12,815	24.1%	3,088	5.5%
경남	53,596	16,738	25.1%	4,201	7.5%
부산	40,126	12,531	27.9%	3,496	6.2%
울산	10,950	3,420	25%	855	1.5%
제주	4,200	1,312	25.1%	329	0.6%
합계	630,366	196,863	28.6%	56,303	100.0%

◆ **친족승계에 머물러 있는 정책 ⇒ M&A形 제3자 승계정책 보완 필요**

□ 정부는 상속·증여방식 친족승계에 초점을 둔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, 핵심 수단은 家業승계 조세 지원(가업상속공제, 증여세특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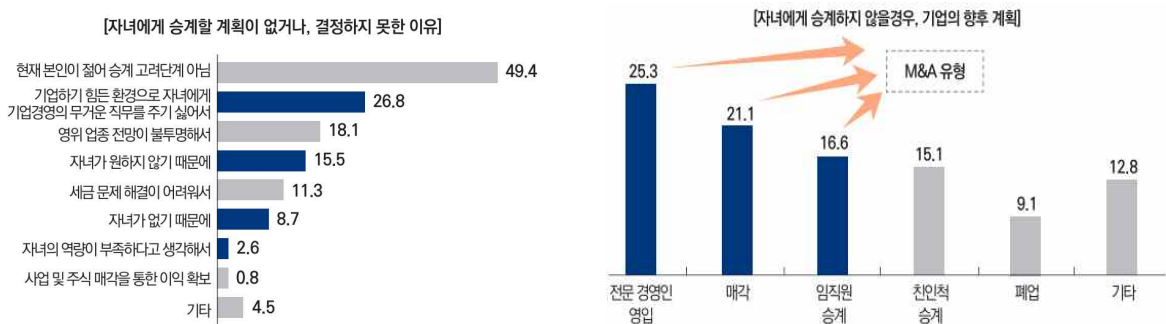
○ 家業승계 지원 세제는 최근 지원이 확대\*되고 있고, 제도 활용도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친족승계 활성화를 위한 토대는 마련

\* 상속공제 한도 : 【'12】 300억원 → 【'14】 500억원 → 【'23】 600 억원  
증여세 저세율<10%> 한도 : 【'15】 30억원 → 【'23】 60억원 → 【'24】 120억원

□ 그러나, ^당사자 승계 기피, ^자녀 부재 등 친족승계가 곤란한 경우가 필연적으로 발생 → 현행 家業승계 지원만으로 한계

○ 자녀승계 계획 없을 경우 ^전문경영인 영입\*, ^매각, ^임직원 승계\* 등 M&A 유형을 대안으로 모색

\* ▲전문경영인 영입, ▲임직원 승계는 결국에는 친족 외 제3자에게 기업의 지분 이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M&A를 통한 기업승계 수요로 고려 가능



※ 기업승계 실태조사(중소기업 중앙회 설문, '25.5월)

□ 고령 CEO 중소기업 M&A 수요\*는 21만개 수준으로 추정되며, 향후 10년간 연평균 2.84% 증가하여 '34년 31만개 수준 전망(자본研)

○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으로 한정(소상공인 제외) 시, 1.3만개사(26만명 고용=1.3×20명<中企 평균고용>) 이상 M&A 수요 잠재

☞ 기업승계 M&A 수요(자본연, '22년 기준) : 약 21만개(소상공인 제외시 1.3만개)  
↳ 60세 이상 중소기업 수 x 후계자 부재율(28.6%) x M&A 희망 비율(설문 30.7%)

⇒ 친족승계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고, M&A 방식의 제3자 기업 승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보완이 필요한 시기

## ◆ 일본은 M&A 활성화로 고령화 시대 기업승계 리스크에 효과적 대응

- 일본의 경우 '07년 초고령 사회(65세 이상 20% ↑) 진입 후, 휴폐업 수가 급증\*(후자 폐업률도 60% 상회)하면서, 경제·산업에 부담

\* 일본 중소기업 휴폐업 추이(도쿄상공리서치, 東京商工リサーチ)

↳ ('00) 16,110개사 → ('07) 21,122개사 → ('11) 25,273개사 → ('16) 29,583개사

- 10년 먼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은 높은 제조업 비중\* 등 산업구조가 우리와 유사한 측면 → 일본의 정책 대응 참고할 필요

\* 주요국 GDP 대비 제조업 비중(%), '22년 World Bank)

↳ 중국(27.5), 한국(25.5), 일본(20.5), 독일(18.9), 미국(10.7), 프랑스(8.9), 영국(8.7) 등

- 일본은 중소기업의 후계부재에 대한 대안으로 M&A를 통한 제3자 승계에 주목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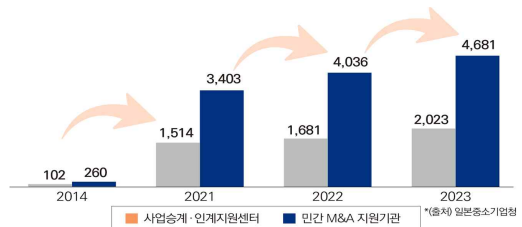
<일본의 기업승계 M&A 촉진정책 주요내용>

구분	주요 내용
경영승계원활화법	• 기업승계 지원 정책 기반(금융, 보조금, 세제지원 등)
사업인계지원센터 네트워크	• 지역별 컨설팅, M&A 수요 매칭 등 정책 수요 대응 거점 운영
중개기관 등록제	• 금융기관, 기업단체 등 협업 네트워크로 기업승계 수요 발굴
	• 민간 중개기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등록제 운영

- 정책추진 결과 최근('22~)에는 연간 4,000건 이상 M&A 성사 등 일본 M&A 시장 활성화 뚜렷

\* 민간 M&A(건) : ('14) 260 → ('21) 3,403 → ('22) 4,036 → ('23) 4,68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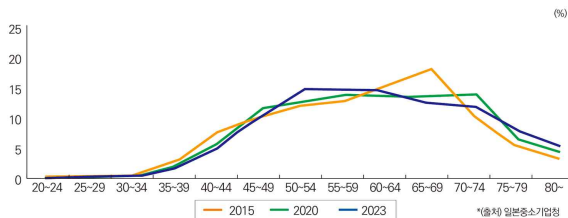
<日 중소기업 M&A 현황(건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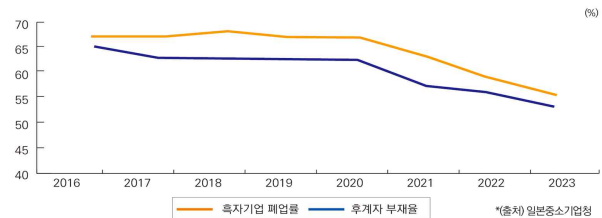
- M&A가 활성화되면서 ^경영자 연령대 하향\*, ^후자 폐업률 하향\*\* 등 기업승계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완화하고 있음

\* 최다 분포 연령 ('15년) 59~65세 → ('23년) 55~59세 \*\* 후자 폐업률 ('16) 64% → ('23) 52.4%

<日 중소기업 경영자 연령 분포>



<日 중소기업 후자 폐업률>



⇒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기업승계 정책(M&A 활성화) 및 성과를 면밀히 참고하여 정책을 준비할 필요

## Ⅱ. M&A형 기업승계 장애요인 진단

### ◆ [장애요인①] 기업승계 M&A를 뒷받침 할 법률적 근거 부재

- 기업승계 M&A는 ‘고령 CEO, ‘장기간 운영 대상기업 특성이 있어 ‘수요발굴 → 중개 → 승계후 성장’ 과정에 걸친 유기적 지원체계 필요
  - 중소기업 M&A 관련 기존 법률규정은 ‘벤처 촉진, ‘기술거래 촉진, ‘소상공인 사업승계 지원 ‘경영위기사 구조전환 등 정책 대상 한정
    - <중기부 소관법안 중 M&A 관련 법적 근거 현황>

법률	주요 규정	대상
벤처기업법	• 상법 특례(절차 간소화 등) • 조세 특례	벤처기업 한정
기술혁신촉진법	• 상법 특례(벤처기업법 상법 특례 인용)	이노비즈 한정
	• 기술거래·사업화(→M&A) 지원 사업 추진	기술거래 한정
소상공인법	• 백년소상공인의 사업승계 지원 근거	소상공인 한정
사업전환법	• 상법 특례(합병절차 간소화, 간이합병 등)	사업전환 한정

### ◆ [장애요인②] 중소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M&A 중개시장 형성 미흡

- (정보 특성) 대기업 등 빅딜과 달리 중소기업 M&A는 매도·매수 기업 수요 정보가 부족하고, 정보를 연결하는 플랫폼 부족
  - 기업의 매각추진 정보 공개시 ‘핵심인력 이탈, ‘거래관계 악영향 등 우려가 있어 M&A 진성 수요 파악이 곤란한 현실



- 중소 M&A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 및 정보 부족(☆☆회계법인)

- 일부 국가에서 온라인 M&A 플랫폼\*이 중개사업 모델로 확산

\* 【日】 바톤즈(Batonz), 트랜비(Tranbi), M&A 석시드(M&A Succeed) 등

【美】 액시알(Axial), 플리파(Flippa), 어콰이어닷컴(Acquire.com) 등

- 최근 국내도 등장하고 있으나, 내실있는 수요 정보 확보·관리 및 매수-매도간 정교한 매칭\*이 관건이 될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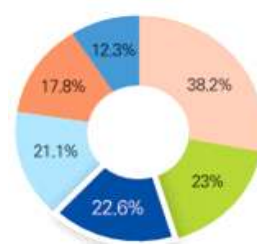
- M&A 매칭은 신뢰를 기반으로 당사자의 숨겨진 정보를 연결하고 설득 하는 과정으로 시스템에 의한 자동 매칭은 한계(☆☆회계법인)

- **(중개·자문 신뢰)** 신뢰도가 높은 회계법인·증권사·투자은행 등은 경험이 풍부한 인력에 대한 비용 등으로 중·대형 M&A에 중점
- 소형 중개업체(所謂 '부띠끄')의 경우, 자본시장이 고도화된 미국\* 등 선진국과 달리 시장의 신뢰가 부족한 상황

\* 대형 투자은행(IB)의 시니어 뱅커들이 설립한 부띠끄(800개 이상)가 대형 IB가 진출하지 않는 중소규모 M&A시장 신뢰 축적(자본시장연구원)

**현장의 목소리** ■ 중개업체 신뢰도 : 신뢰할 수 있다(8.8%) vs 신뢰하기 어렵다(41.1%)  
(중소기업 M&A 인식도 조사, IBK 경제연구소<'25.5월>)

- CEO들도 M&A 의향 없는 요인으로 ^정보부족, ^비용부담 등과 함께 “기업가치평가 불안”을 꼽아,



■ 매수지 정보부족 ■ 자료부족  
■ 비용부담 ■ 심리적 저항감  
■ 기업가치평가 불안 ■ 성당성대 없음

→ 중개 신뢰도 문제 방증

### ◆ [장애요인③] M&A 절차를 규율하는 제도·절차 비효율

- **(M&A 과정)** 상법의 M&A 규율은 M&A 절차를 지연하는 요소
- 상법은 M&A시 주주총회, 계약서 공시 등 주요 절차별로 최소기간을 부여하고 있어, M&A 활성화 걸림돌로 지적
- 특히, 주주 수가 상대적으로 소규모\*인 중소기업 M&A에 현행 상법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절차 비효율 초래

\* 대주주 수 평균(KoDATA<27만개사>, 명) : 대기업 12.89 / 중기업 6.49 / 소기업 3.77

상법의 최소절차에만 3개월이상 소요



- **(등기 절차)** M&A 후 부동산 소재지에서만 등기 사무처리 인정
- 생산시설, 사무소 등 부동산이 여러지역에 분산 소재된 기업 M&A시 등기 절차에 행정적 불편을 초래

\* 상속·유증시에는 부동산 소재지와 관계없이 등기사무 가능하도록 부동산등기법 특례를 운영하고 있으나, 기업 M&A에는 이같은 특례 규정 미비

◆ **[장애요인④] M&A 단계별 비용 발생이 상당하나, 특화된 지원은 미흡**

□ **(M&A 준비)** M&A 방식 기업승계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은 M&A 준비 비용은 부담으로 작용

○ 기업승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기업들의 저변확대를 위한 마중물로서 기업별 M&A 컨설팅 및 주요 소요 비용\* 지원 필요

\* M&A 교섭에 필요한 소개 자료(TM, Teaser Memorandum) 제작 비용이 대표적  
↳ 보안이 중요하고, 교섭 성패 좌우 중요자료 → 전문가 의뢰 일반적(최대 5천만원 소요)

연장의 목소리

▪ 인수하려는 기업군에 대한 상세 정보가 없어 개인적 네트워크로 정보 및 방법을 찾다보니 많은 시간·비용 소모(25년 기업승계 M&A 사례기업 A社)

□ **(M&A 진행)** 인수자금, 중개수수료 등 M&A 본격 진행시 수반비용 부담 완화가 필요하나, 특화된 정책 프로그램 부족

○ 정책 금융기관들이 기업승계 인수자금 대출·보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 근거 필요

○ 인수자금 이외에도 ^기업가치평가(건당 최소 2천만원), ^실사(DD\*), ^중개수수료(딜 가격의 2~3% 성공보수 통상적) 등 비용발생 요인 다수

\* Due Diligence : M&A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재무,세무,법률 등 관점의 실사가 필수적  
↳ 인수대상 기업 리스크를 확인·회피하는 단계로 인수자 부담이 일반적(대략 3천만원)

□ **(M&A 이후)** 승계 후 경영안착 및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인수후 통합\*(PMI, Post-Merger Integration), 시설개선 등 비용 증가

\* M&A 후 ▲업무 프로세스, ▲인사제도, ▲조직문화 등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과정

○ 특히, AX·DX 등 최근 급변하는 경제·산업 환경 고려시, M&A 승계 후 지속성장을 위한 설비개선 투자 수요 등 증가 예상

연장의 목소리

▪ 20년 이상 중소기업을 M&A 방식으로 승계하였는데, 노후설비 개선 등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 제2의 창업 수준 (25년 기업승계 M&A 사례기업 A社)

### Ⅲ. 핵심 추진과제

◇ 기업승계 M&A 활성화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될 특별법\* 제정 추진

\* (가칭)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

추진 목적

CEO 고령화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지속경영 도모

추진 방향

지속 가능 중소 M&A 시장조성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



#### 추진 과제

##### 정책 기반 확립

- ☑ 정책범주 확장(기업승계→기업+M&A형승계)
- ☑ 승계 지원 정책 대상 명확화(경영자 연령 등)
- ☑ 지원 인프라(기업승계지원센터) 구축·운영

##### 신뢰도 높은 M&A 시장형성

- ☑ 기업승계 M&A 중개기관 등록제 도입  
\* 등록 중개기관을 통한 M&A 진행 비용 지원
- ☑ M&A 플랫폼 구축·운영

##### M&A 친화적 환경 조성

- ☑ 승계 M&A 시 상법 절차 촉진 특례 도입
- ☑ 등기절차 편의 제고
- ☑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도출  
\*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

##### 기업승계 및 승계 후 성장지원

- ☑ 기업승계 M&A 정부 지원 및 예산 근거(계정 설치)
- ☑ 정책 금융 우대 근거 마련
- ☑ 모험자본 조성 및 승계 후 성장지원 추진

◆ **[추진과제①] 기업승계 정책추진을 위한 법적기반 확립**

□ **(정의 체계)** 기업승계 정책범주를 기존 家業승계(친족승계)에서 M&A를 통한 제3자 승계로까지 확장

- **^인수·합병形 승계와 ^가업승계(家業承繼)로 유형화하여**  
2가지 유형을 모두 포괄하는 기업승계의 법적 정의 체계를 확립
- 기업별 상황에 따라 승계방식(M&A vs. 家業승계)이 유동적이므로, 家業승계\*와 M&A를 뒷받침하는 유기적 정책 기반 마련

\* 現 중소기업진흥법에 규정된 가업승계 지원 근거를 이관하여 특별법에 반영

<기업승계 법적 유형 체계(안)>

구분	M&A형 승계(신설)	家業승계(이관)
승계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친족 外 제3자*</li> <li>* 동종업계 기업, 임직원, 펀드 (전문경영인), 창업자 등 다양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자녀 등 친족</li> </ul>
승계 방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▲주식(지분) 양수도, ▲합병, 분할합병 ▲주식 포괄 교환·이전, ▲영업 양수도 등 M&amp;A 방식 포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상속 또는 증여</li> </ul>
現 정책 (근거 법률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업승계 M&amp;A 정책 부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·운영 등 (중소기업진흥법)</li> </ul>

□ **(지원 기준)** 기업승계 정책대상, 적용제외 등 정책운영 기준 제시

- **(지원 대상)** 피승계기업 ^경영자 연령, ^경영기간 등 대상 요건을 법률에 반영하고, 상세 기준은 탄력적 운영을 위해 대통령령\* 위임

\* 주요 기준(안) ▲경영자 연령 : 60세 이상, ▲경영기간 : 10년 이상

- **(적용 제외)** ^타 법률과의 충돌 방지, ^정책 취지, ^사회 통념상 지원 부적절성 등 고려 법률 적용 제외 대상을 명확히 반영

구분	제외 대상(안)
타 법률 충돌 방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상장사는 일반주주 보호 등을 위해 자본시장법 우선 적용</li> <li>* 제외(안) : 자본시장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</li> </ul>
정책 취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하기 곤란한 부실기업은 승계지원에서 제외</li> <li>* 제외(안) :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등</li> </ul>
사회 통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(시행령 위임)</li> <li>* 제외(안) :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난 기업 등</li> </ul>

□ **(사후 관리) M&A 승계 후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고용유지 등 일정 조건과 연계하여 운영·관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확보**

\* 家業승계의 경우, 현행 세법(상증세법 등)에 의해 ▲경영여부(휴·폐업 금지 등), ▲업종유지, ▲고용유지, ▲자산처분 제한 등 사후관리 적용 중(승계 후 5년간)

<참고 : 現 가업상속공제 시 사후관리 주요내용(상증세법)>

요건	주요 관리 내용
경영 여부	■ 대표이사 취임 여부(2년내), 휴업, 폐업 여부 등
업종 유지	■ 주된 업종 변경 여부(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 변경 허용)
고용 유지	■ 정규직 근로자수(90%), 총 급여액 유지(90%) 여부
자산 처분	■ 기업 상속 후 상속인의 지분 변동 여부

□ **(지원 인프라) 중소기업 승계에 대한 종합적 지원업무를 수행할 '기업승계지원센터' 지정·운영 근거 마련**

- 「인식개선 및 수요 발굴 - 승계전략 컨설팅 - M&A 자문·중개 - 금융(자금보증 등) 및 보조금 지원」 등 기업승계 과정 지원 수행
- 기업승계지원센터는 ▲공공, ▲민간(금융기관, 협단체)을 지정·운영하여, 각각의 특·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체계 운영

<기업승계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>

구분	지정시 주요 고려사항	지정(예시)
공공	· M&A 업무 전문성, 지원정책 수행 인프라 등	기술보증기금, 중진공 등
민간	· 중소기업과의 접점 및 기업간 네트워크 등	· (금융) IBK 기업은행 등 · (단체) 중앙회, VC 협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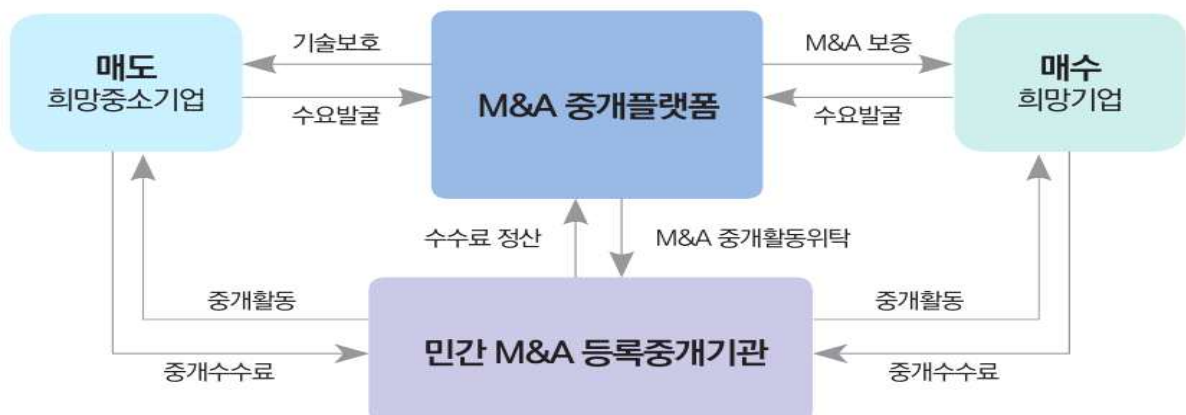
□ **(정책 기반) 기업승계 실태조사, 기업승계 촉진을 위한 정기 기본계획 수립·시행 등 안정적 정책추진 필요 근거 마련**

- (실태조사) 정책 추진 및 성과관리를 위해 기업승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 실시하고 공표(관계기관 협조 근거 포함)
- (기본계획) ▲기업승계 관련 동향·현황·전망, ▲기업승계 지원 정책, ▲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에 관한 정기 기본계획 수립·시행

## ◆ [추진과제②] 신뢰도 높은 기업승계 M&A 시장 형성

- **(플랫폼)** 기업승계 과정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업승계 M&A 중개 플랫폼(이하 '플랫폼') 구축·운영
  - 플랫폼을 통해 ▲수요정보(매수-매도 희망기업), ▲중개업자 정보, ▲기업별 중개 경과 등 기업승계 M&A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
  - ▲수요자(매수-매도 신청), ▲중개업자(등록)는 플랫폼에서 필요 정보\* 탐색
    - \* 매도희망 기업 정보는 식별이 제한되는 형태의 TM(Teaser Memorandum) 정보로 제공
- ⇒ 플랫폼 운영기관\*은 진성 수요를 선별·관리하면서, 중개 계약 진전에 따른 ▲지원(보증, 수수료 등), ▲기술보호 등 역할 수행
  - \* 기업승계지원센터 중 M&A 업무 전문성 등 고려하여 중기부 장관이 지정
  - ※ 특별법 시행 前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기업승계 M&A 플랫폼 구축 예정(~'26.상)
- **(중개기관 등록제)** 중소 M&A 중개시장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승계 M&A 중개기관(이하 '등록 중개기관') 등록제 도입
  - 자문·중개 역량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등록요건\*을 운영하고, '등록 중개기관'은 플랫폼 활용으로 수요탐색 및 중개영업 가능
    - \* ▲M&A 전문인력(회계사 등) 보유, ▲자문·중개 실적, ▲ 재무상태(자기자본, 매출 등)
  - “내실 있는 중개기관 유입 ⇔ M&A 성사 증가”의 선순환 촉진을 위해 '등록 중개기관'을 통한 M&A로 정부 지원대상 한정

기업승계 M&A 플랫폼 및 중개기관 협업체계 구축운영



◆ **(추진과제③) 기업승계 M&A 친화적인 환경 조성**

- **(절차) 상법상 M&A 주요절차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 신설**
  - **^주주총회, ^계약서 공시, ^채권자 보호, ^소재불명 주주요건\*** 등 주요절차에 대한 **법정 최소기간 단축**
    - \* (현행) 3년 이상 소재불명인 주주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없이 절차 진행 가능
  - **소규모 합병특례\*** 요건을 특별법에 의한 기업승계 M&A시에는 **완화**
    - \* 주주총회 절차를 생략하고 이사회로 갈음 가능(상법 제527조의3 등)
  - **소규모 영업 양도(자산의 10% 미만) 시 주주총회를 이사회로 갈음**
    - \* (현행)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,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등 행위를 할 때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함(상법 제374조)
  - **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시기를 앞당겨 절차를 촉진하고, 청구권 행사후 매수 기간을 확대하여 기업의 유동성 부담 완화**  
<기업승계 M&A시 상법 특례 도입(안)>

구분		특례 주요내용
절차 단축	주주총회	•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점 완화(2주전 → 7일전)
	계약서 공시	• 기간 단축(<주총 2주전~합병후 6개월> → <7일전~6개월>)
	채권자 보호	• 이의제기 기간 단축<1개월 이상 → 10일>
	소재불명 주주	• 소재불명 기간(현재 3년) 단축
소규모합병		• 소규모 합병요건 완화<소멸회사 주식총수 10% → 20%>
소규모 영업 양수·도		• 소규모 영업(자산 10% 미만) 양도절차 완화(주주총회→ 이사회 승인)
주식매수청구권		• (청구) 기간 단축<20일→10일> • (매수) 청구후 2개월 → 6개월





- **(등기) 기업승계 M&A 시 승계자산 소재지 등기사무 허용**
  - **상속·유증 시 부동산 등기사무 관할에 준하는 내용의 특례 신설**
- **(인센티브) 기업승계 M&A 수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중소기업계·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모색**

**현장의 목소리** ■ 기업승계 M&A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절차·행정적 사항 뿐 아니라 ▲자금 조달 ▲리스크(우발채무 등), ▲세금 등 다양한 요소 고려 필요 (☆☆회계법인)

## ◆ [추진과제④] 기업승계 활성화 및 승계 후 성장을 위한 지원

- ^기업승계지원센터 및 플랫폼 운영, ^M&A 비용보조, ^정책금융 우대, ^성장사업, ^기업승계활성화 설치 등 안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

<기업승계 지원에 관한 주요 근거 규정(특별법 반영)>

구분	주요 내용(지원 근거 입법)
 인프라 운영	• 기업승계지원센터 지정·운영 및 통합플랫폼 구축·운영 비용 지원
 준비·탐색	• 기업승계 M&A 수요 기업에 대한 초기비용(컨설팅 등) 지원
 M&A 중개과정	• M&A 등록 중개업자의 중개 → 수수료 및 제반 비용 보조 • 보증 우대(기술보증기금·신용보증기금), 자금우대(중진공) 등 • 국가·지자체 운영 용자·투자·보조금 등 우대 근거 운영
 M&A 후 성장지원	• 기업승계 후 지속성장 지원(경영·재무 자문 등) 근거

## IV. 향후 추진일정

- 특별법 발의(~'25.12월) → 공청회('26.1Q) → 입법완료(~'26.상)
  - 기업승계지원센터 및 플랫폼 시범 구축은 특별법 제정 前 착수

정책 과제	일 정	비고
<b>1. (가칭)인수·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</b>		
▶ 법안 발의	'25.12월	국회
▶ 공청회	'26.1Q	국회·중기부
▶ 특별법 제정 완료	'26.상	국회
▶ 특별법 시행	제정 후	중기부
<b>2. 기업승계지원센터 및 플랫폼 시범 구축·운영</b>		
▶ 기업승계 M&A 인식개선·수요발굴(간담회 등)	'26.1Q	중기부·기보 등
▶ 기업승계 M&A 플랫폼 구축	'26.상	중기부·기보
▶ 기업승계 M&A 플랫폼 시범 운영	'26.하	중기부·기보